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1
----------	-----

제출년월 : 2023년 11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심리안정 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민간경력자 등 연가가산 기준 정비 등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고, 장기재직 휴가 부여대상 확대와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 연가 전환 가능 규정을 마련하여 근무만족도와 업무성과를 높여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연가 전환 가능 규정 신설(안 제15조제4항)

나. 민간경력자 등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18조, 안 별표4)

- 민간경력자 등 채용시 가산되는 연가대상을 재직기간 2년미만에서 5년미만까지 확대하고, 연가일수를 각각 2일에서 3일로 확대

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휴가 제도 개선(안 제24조제2항 제3호, 안 제24조제9항, 안 제24조제12항)

-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수정
- 재해구호휴가 사유 및 대상 명확화
- 장기재직 휴가 부여대상 및 일수 추가 신설

라. 심리안정휴가 신설(안 제24조제15항)

마.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3)

바. 기타 운영상 보완사항 수정

- 법령 폐지 등으로 인한 현행 법률 조항 수정(안 제20조의3, 안 제23조 제11호, 안 제24조제8항)
-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안 제24조제2항제2호, 안 제24조제7항)
- 검직허가 절차 관련 단서 조항 삭제(안 제28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

-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3. 9. 27. ~ 2023. 10. 17.(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평가 제외 대상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평가 제외 대상
- 아동영향평가 결과 : 대상아님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2년 미만인”을 “5년 미만인”으로, “2년 미만의”를 “5년 미만의”로, “2일”을 “3일”로 한다.

제20조의3 중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을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연가일수 중”을 “연가일수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으로 한다.

제23조제11호 중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 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만 40세”를 “40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산”을 “사산 또는 조산(早産)”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만 5세”를 “5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을 “「한

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10년”을 “5년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제2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3 경조사 휴가일수표의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 산	배우자	10 (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	-----------------------------------

별표4의 제목 중 “제18조의2 관련”을 “제18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4의 제2호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중 “2일”을 “3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u> <u>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u> <u>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u> <u>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u> <u>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u> <u>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u> <u>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외</u> <u>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u>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u> <u>정한다.</u>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u>2년 미만인</u> 경우로서 별표 4에 따라 <u>2년 미만의</u>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u>2일</u> 을 더한다.	제18조(연가일수) ----- -----. ----- ----- ----- ----- <u>5년 미만인</u> ----- ----- <u>5년 미만의</u> ----- ----- <u>3일</u> ----- -----.

제20조의3(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5조제2항, 제18조, 제20조의2, 제22조, 제24조제4항·제12항,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

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3조(공가)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제20조의3(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

-----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

-----.

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
----- 연가일수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공가) -----

-----.

1. ~ 10. (현행과 같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한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 13. (생략)

제24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11. -----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
지역-----

12. · 13. (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 ⑥ (생략)

⑦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돌봄 등을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
사산 또는 조산(早産)-----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5세 -----

-----.

⑧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

-----.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⑩ · ⑪ (생략)

⑫ 구청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1항을 따른다.

⑬ · ⑭ (생략)

<신설>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 ⑪ (현행과 같음)

⑫ ----- 5년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

----- . -----
-----.

⑬ · ⑭ (현행과 같음)

⑮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8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하지 않음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8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하지 않음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장 홍지현